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818

제출연월일 : 2023. 10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권한의 위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하역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표준하역비 규정 개정(안 제61조)
- 나.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
 - 시장관리운영위원회,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77조, 제78조)
 - 도매시장 관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등 (※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9. 20. ~ 10. 10.(20일간)

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4) 갑질영향심사: 개선의견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: 개선의견 2건(미반영)
 - 제77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제78조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⇒ 관계 법령 등에 성별 균형에 관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원안을 유지함
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4항 중 "파렛트반입·파렛트경매"를 "파레트반입·파레트경매"로, "파렛트 반입으로 한다.)과 파렛트로 반입되는"을 "파레트로 반입되는 표준 규격출하품 중 출하자, 품목, 등급이 모두 동일한 경우로 한다.)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규격 출하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77조제3항 중 "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"을 "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"으로 한다.

제78조제3항 중 "소장"를 "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"으로 한다.

제96조의 제목 "(권한의 위임)"을 "(권한의 위탁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"각 호의 업무"를 "각 호"로, "소장에게 위임한다"를 "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4호) 중 "법 제23조"를 "제7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1호(종전의 제7

- 호) 중 "법 제36조"를 "제34조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에 관한 사항
 - 4. 제9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
 - 7. 제1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휴 · 폐업에 관한 사항
 - 5. 제10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
 - 6. 제14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
 - 12.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
 - 13. 제38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
 - 14. 제39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
 - 15. 제52조에 따른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
 - 8. 제23조에 따른 중도매인 상한 수에 관한 사항
 - 9. 제24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
 - 10. 제28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
 - 16.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·경고를 제외한 행정처분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- 별지 제3호, 별지 제4호, 별지 제5호, 별지 제6호 서식 중 "대구광역시농수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"을 "대구광역시장 귀하"로 한다.
- 별지 제7호서식 중 "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(인)"을 "대 구광역시장(인)"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"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"를 "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"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, 별지 제14호, 별지 제16호, 별지 제17호, 별지 제19호, 별지 제20호 서식 중 "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"을 "대구광역시장"으로 한다.

별지 제26호서식의 "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(인)"을 "대 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(인)"으로 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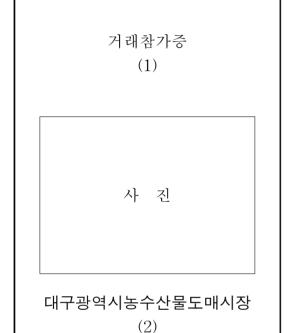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6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거래관계자의 표지(제72조 관련)

1. 거래참가증

가. 앞면



가로 70mm× 세로100mm

나. 뒷면

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.

대구광역시장(인)

- 1. 본증은 거래 참여 시 반드시 상의 전면에 달아야 한다.
- 2.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.
- 3. 대구광역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.
- 4. 자격상실시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한다.
- 5.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.
- 6.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
다. 비고

- (1)란에는 경매사·중도매인·보조중도매인·매매참가인 구분표시
- (2)란에는 부류명 기재
- 보조중도매인(보조경매참가자)에 대한 거래관계자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구농수 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이 수행한다.

2. 거래관계자 복장

거래관계자	표지 구분	규격	바탕색	표지글씨
경 매 사	모 자	6각모	곤 색	앞면에 황색 글씨로 "경매사"라 표시

신구조문 대비표

개 정 \circ } 혅 했 제61조(표준하역비의 부담) ① ~ 제61조(표준하역비의 부담) ① ~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의 표준하역비를 부담하 는 청과부류의 규격출하품은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출하품(파렛트 -----파레트바입·파 반입 · 파렛트경매로 함. 다만, 법 레트경매----제3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파 ----- 파레트로 반입되는 렛트 반입으로 한다.)과 파렛트로 표준규격출하품 중 출하자, 품목, 반입되는 표준규격품 중에서 국내 등급이 모두 동일한 경우로 한 산 정가수의로 거래한 경우로 한 다.)과 -----다. <신 설>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 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 여 규격출하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. 제77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・ │제77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·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,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농수산 ---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-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

제78조(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 제78조(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

- 회) ①・② (생략)
-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,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간사 1 인을 둔다.
- ④ (생략)
- 제96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다음 제96조(권한의 위탁) ----- 각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소 장에게 위임한다.
 - 1. 법 제17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
 - 2.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법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- 4.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 인 지정에 관한 사항
- 5.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 합병에 관한 사항
- 6.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 인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7.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

회)	\bigcirc	(2)	(현행과	간음)
-1	\ T /		1 1 0 -	\vdash

--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호----대구농 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에게 위 탁한다.

- 1. 제3조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 에 관한 사항
- 2.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- 4. 제9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재 지정에 관한 사항
- 3. 제7조-----
- 5. 제10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
- 6. 제14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
- 7. 제1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휴·폐업에 관한 사항
- 11. 제34조----

지정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 8.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

 재지정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

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12.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재 지정에 관한 사항
- 13. 제38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
- 14. 제39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
- 15. 제52조에 따른 상장되지 않은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
- 8. 제23조에 따른 중도매인 <u>상한</u> 수에 관한 사항
- 9. 제24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등에 관한 사항
- 10. 제28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최 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
- 16.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 에 대한 주의 · 경고를 제외한 행 정처분

관계 법 령

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- 제21조(도매시장의 관리)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(이하 "관리사무소"라 한다)를 두거나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(이하 "관리공사"라 한다),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<u>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, 거래질서</u> 유지,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40조(하역업무)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,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(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)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85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<u>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</u>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1. 제29조(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 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·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
- 2.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·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

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3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·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·이전·폐쇄명령 및 개설·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〈개정 2013. 3. 23.〉
-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 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
- 1. 법 제29조(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·제한, 그 밖에 필요한 조치
- 2.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·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 집행 상황 보고명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안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권한의 위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하역비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농산유통과장 최 상 욱